

1. 개정이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안 제55조제2항)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의 총중량) 범위 안에서 총중량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허용

나.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별지 제33호의4 서식 신설 및 별지 제33호의5 서식 신설)

1) 일시적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사용목적 등을

-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 2) 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은 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착물은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
- 3)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
- 4)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
- 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를 준용(안 제106조의3)
-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 공개 규정을 준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에 대한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총중량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를 각각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12까지로 하고,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대상) 법 제3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길이, 너비, 높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튜닝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등화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할 것
4.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차대 또는 물품적재장치에 4개소 이상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6조의4(일시적튜닝의 승인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3

호의3서식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6조의3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튜닝작업기간, 사용기간, 원상복구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 사용일 이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8. 제56조의3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
전공단에 제79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확인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
력하여야 하며, 확인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것으로 본다.
 - 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와 측면 좌우
전체를 촬영한 사진
 - 나. 튜닝작업 자동차의 공차상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량
증명서 등)
 - 다. 등화 위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등화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 라. 고정상태 각각을 촬영한 사진(4개소 이상)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튜닝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6조의6(중전의 제56조의3)제4항 중 “제56조의9”를 “제56조의12”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9조 전단 중 “자동차검사신청서를”을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6조의4제6항제8호 단서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서

나.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

서

제106조의3 중 “제48조”를 “제48조, 제49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의2제4항제1호 중 “제56조의5”를 “제56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6조의6”을 “제56조의9”로 한다.

별표 5의3 중 “(제56조의5 관련)”을 “(제56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튜닝 사항	구조 및 장치	
	튜닝내용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3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 사항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0,000mm×0,000mm×0,000mm	0,000mm×0,000mm×0,000mm
	차량총중량	0,000kg	0,000kg
일시적 튜닝 사유	[]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그 밖에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유:)		
사용기간	예) 선거유세기간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원상복구기간	예)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자동차관리법」 제3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 일시적튜닝 신청은 해당 자동차 사용일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은 선거유세기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원상복구기간은 사용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10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일시적튜닝 승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 승인 내용	길이×너비×높이	0,000mm×0,000mm×0,000mm
	차량총중량	0,000kg
튜닝 작업 업체	업체명	
	작업완료일	
일시적 튜닝 사유	예)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유효기간	예)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자동차관리법」 제3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유의사항

-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 사용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번호판이 가리게 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추가 발급받아 번호등 및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동차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등록번호	
검사구분	☐ 튜닝검사 ☐ 임시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사유: ☐ 침수 ☐ 사고 ☐ 도난·분실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9조 및 제7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튜닝검사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튜닝 승인서 3.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임시검사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제5항제8호 단서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서 나.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	
수리검사	1.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3.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등) ① (생 략)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 ----- ----- ----- ----- ----- ----- ----- ----- -----.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총중량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 ----- -----.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
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
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
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
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
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4. (생략)

③·④ (생략)

<신설>

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하는 경
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삭제>

<삭제>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대상) 법
제3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

<신 설>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 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길이, 너비, 높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튜닝으로 인하여 가려지는

<신 설>

등화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할 것

4.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차대 또는 물품적재장치에 4개소 이상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6조의4(일시적튜닝의 승인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

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6조의3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튜닝작업기간, 사용기간, 원상복구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 사용일 이전까지 자동차정

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8. 제56조의3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79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신

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확인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입력하여야 하고, 확인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입력된 것으로 본다.

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와 측면 좌우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튜닝작업 자동차의 공차 상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량증명서 등)

다. 등화 위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등화 위치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라. 고정상태 각각을 촬영한 사진(4개소 이상)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입력된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튜닝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 에 일시적튜닝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 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 야 한다.
<u>제56조의2</u> (생략)	<u>제56조의5</u> (현행 제56조의2와 같 음)
<u>제56조의3</u>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략)	<u>제56조의6</u> (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법 제34 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 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 실을 <u>제56조의9</u> 에 따른 튜닝부 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 ----- ----- ----- ----- --- <u>제56조의12</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4</u> ~ <u>제56조의9</u> (생략)	<u>제56조의7</u> ~ <u>제56조의12</u> (현행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9까지 와 같음)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 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 -----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
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
명서

2. ~ 5. (생략)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
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
검·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 설>

-----.

1. -----
----- 말소등록사실증
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
우만 해당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

-----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

<후단 삭제>

1. 제56조의4제6항제8호 단서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신 설>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6조의5 및 별표 5의3에 따

칙」 제56조의4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서

나.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점검·정비 등 명령서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 제48조, 제49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
 -----.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56조의8 -----

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 준 2. <u>제56조의6</u>에 다른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 2. <u>제56조의9</u>----- -----
--	--